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33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 곽상언·박민규·박희승

문금주 • 박정현 • 한민수

김성회 · 김성환 · 박지혜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니라 국제 적으로도 결혼문화, 패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 주얼 리산업은 유럽·중국 등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했 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 할을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주얼리 세공기술을 인정받고 있지만 수많은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연간 약 1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고급 주얼리시장의 50% 이상을 잠식하는 등 국내 주얼리산업은 해외 주요국 대비 국제경쟁력을 잃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얼리가 1990년까지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

정되는 등 주얼리시장이 기형적으로 형성·왜곡되어 왔고, 주얼리 제품에 높은 세율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어 주얼리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었음. 또한, 주얼리의 음성적거래로 인한 탈세 및 자금세탁이 만연하고, 모조품 등의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등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가 갈수록심화되며 주얼리 제조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무엇보다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들이 불량 금 또는 합성 보석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극심하고 이는 소 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 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이 있는 소 비자들은 오히려 해외 명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어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의 매출이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등 막대한 국부의 유출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의 권고사항(The FATF Recommendations)에 따라 특정비금융사업(카지노업종,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인 주얼리소매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지만, 그동안 잘못된 제도 유지에 기인한 산업의 음성화로 인해 아직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얼리를 제3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한류 상품(K-JEWELRY) 으로 도약시키고, 주얼리시장에서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 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얼리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 체계, 주얼리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The FATF Recommendations)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에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주얼리 거래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더불어 주얼리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얼리소매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주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주얼리산업기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석ㆍ귀금

- 속 및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
- 라. 주얼리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결격사유, 주얼리소매사업자의 지위 승계,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취소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주얼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 주얼리의 품질 검증 및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 16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판매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 아. 정부는 주얼리산업 관련 국제전시회에서 전시·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안 제19조).
-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등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주얼리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기술의 전수 및 발전을 위하여 기술 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주얼리"란 주얼리 원재료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만들어진 반지·브로치·목걸이·귀걸이·팔찌 등과 같은 장식물을 말한다.
- 2. "주얼리 원재료"란 주얼리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다이아몬드, 진주 등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금·은 등 귀금속과 희귀 광물 등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주얼리산업"이란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제조하거나,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판매·수입·수출·전시 또는 그 밖에 주얼리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을 말한다.
- 4. "주얼리소매업"이란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소비자에게 판

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주얼리소매업자"란 주얼리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 리산업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제조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주얼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고용 창출, 중소기업 육성,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해외 경쟁력 확보 등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The FATF Recommendations)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주얼리 소매업의 등록·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 제5조(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 2.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 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창업 및 제조 지원에 관한 사항
 - 4. 주얼리의 제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5. 주얼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6. 주얼리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7.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 8.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9. 주얼리 국제전시회 개최 및 면세제도 운영, 주얼리전문 면세점 허가 등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 10. 제20조에 따른 우수주얼리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
 - 11. 그 밖에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주

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 ①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2. 주얼리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보석·귀금속 및 주얼리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주얼리 소매업자의 등록 등

- 제7조(주얼리소매업자의 등록) ① 주얼리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주얼리소매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얼리소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주얼리소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 주얼리소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3. 법인인 주얼리소매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주얼리소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얼리소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처분효과의 승계) 제8조에 따라 주얼리소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주얼리소매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거 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소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등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

제12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얼리산업 관련 해외 실태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 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주얼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 및 해외 주얼리산업 관련 자료를 분석·가공한 통계(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

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직업 훈련 및 직업 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사업
- 2. 신규 주얼리산업 관련 인력의 유입 활성화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사업
- 3. 주얼리기술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 스 구축·운영 및 기술 전수에 관한 사업
-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5. 그 밖에 주얼리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대학,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얼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창업 및 제조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주얼리의 제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제 조하는 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조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주얼리의 품질을 검증하고 주얼리의 제조에 필요한 주얼리기 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주얼리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주얼리 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주얼리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한다.
-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주얼리 관련 국제전시회 기간 중 전시장 내에서 전시 또는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상품 및 브랜드 개발, 국제전시회 개최 및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우수주얼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주얼리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주얼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우수주얼리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주얼리에 대한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

- 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우수주얼리의 지정 기준·절차·표시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우수주얼리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주얼리의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기술의 전수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기업 중에서 기술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주얼리기업 명가로 선정하여 해당 기업에 포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사업 전부를 친족에게 양도한 주얼리기업일 것
 - 2.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양도 시 업종 및 고용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주얼리기업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주얼리기업 명가의 구체적인 요건, 선정절차 및 지

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취소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경우 "우수주얼리"는 "주얼리기업 명가"로, "지정"은 "선정"으로 보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의 요건"으로 본다.
- 제2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얼리기업 명가가 아닌 자는 주얼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주얼리산업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 2.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 3.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제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 4.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 5. 주얼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 6.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7.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관련 해외 동향

및 정보 제공

-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주얼리산업의 융합 및 연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통 세 공기술과 현대 주얼리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주 얼리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이 현대적 디자인, 전통문양 등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의 생활화·산업화 및 세계화 등을 통하여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7조(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그 관련 단체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있다.

제5장 보칙

- 제28조(보고와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얼리의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얼리소매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얼리소매업을 영위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자
- ②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우수주얼 리 지정을 받은 자

-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우수주얼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주얼리 되의 표시를 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얼리기 업 명가로 선정 받은 자
- 4. 제23조를 위반하여 주얼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5.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얼리소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주얼리소매업을 영위하려면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